

# 도정질문 서면답변서

— 제 120 회 정기회 '95. 11. 30 ~ 12. 2 —

의 사 담 당 관 실

# 서 면 답 변 서 목 록

질문의원	답 변 내 용	페 이 지
이 민 희  (장준호)	의료서비스 개선방안대책	359
	먹는샘물 제조업체 현황	361
	지역의료 보험료 자동납부방안	363
장 준 호  (이민희)	난계국악단 운영지원 검토	365
	미술실기 외국인 석고상 개선	366
	기술노동자협회 설립문제	367
최 중 철	수해예방대책 (남한강변)	369
김 재 근	추곡수매 개선	374
	도지사 선거공약 (관변단체 지원) 재검토	383
박 용 인	'95 도정 주요성과 상수도 관망도 작성계획	※ 별도 유인물 384
유 재 철  (이향래) (이희복)	'93 냉해피해 상황 및 지원실태	387
	보은지역 직행버스 정차장 관련	394
	학교아동 급식시설 현황	401
	보은개발 촉진지구 개발계획	402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지원현황	408

※ ( ) 내서는 보충질문임

## 지역의료서비스 개선방안 대책

### □ 답변요지

- 농촌지역 특히, 오지 면지역에는 일반 병의원을 개설 운영하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 원인은 환자수요가 적어 운영비등의 수지타산이 맞지않아 농촌지역에 의사들이 병.의원 개설을 기피하는 현상 때문 입니다.
- 그리하여 대부분 농촌주민들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등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또한 일반 병의원이 있다하여도 진료비가 비싸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현재 일선 보건행정 의료체계를 말씀드리면,
  - 시.군.구 단위에 보건소 1개소씩을 설치 종합보건의료행정을,
  - 96개읍.면 단위에는 보건지소 1개소씩을 설치 의사 2명, 간호사 2명, 보건요원 2명을 배치, 일반 및 치과진료를 하고 있으며,
  - 마을단위 특히, 오지부락에는 보건진료소 (도내 165개소)를 설치 보건진료원 1명을 배치 가정방문 보건사업을 수행, 주민의료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의료시설이나 장비등의 노후화로 의료행정 수행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 따라서 도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연계 농특세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통하여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코자 시군보건소 보건지소등에 시설, 장비보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사업추진 내용을 요약 보고드리면,
  - 정부사업추진계획은 '94~98년까지 5개년에 걸쳐 1,415억원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 및 장비보강에 투자되는 농특세사업으로,
  - 우리도에 금년도사업은 보건소 4개소에 42억 1천만원, 보건지소 3개소에 7억 4천만원이 투자되어 시설이나 장비보강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보건소, 보건지소등의 시설,장비보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조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 아울러 도에서도 시군구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에 있어서는 근거리 지역의 래방자 치료와 함께 교통이 불편하고, 고령층환자들이 많은 오지면에 대하여는 앰블런스를 이용 현지에서 보건소 물리치료실 까지 이송치료를 병행 실시토록 하는등 주민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먹는샘물제조업체현황

시·군별	소재지	업체명	취수공	비 고			
				제조업허가	제조업신청증	수원개발허가	취수량(㎥/일)
계		29개업체	97	4 (34공)	14 (31공)	11 (32공)	23,438
★ 청원 14개업체 54공 (48.3%)	북일 초정	일 화	8	○			705
	' '	스파클	9	○			730
	미원 대신	반석광천수	3			○	600
	' '	우 정	4			○	180
	' '	저평식품	1			○	1,000
	' 수산	수산음료	2		○		500
	' 쌍이	스 파 클	7			○	2,800
	' 구방	할티개발	2		○		380
	' 성대	창대음료	3		○		2,120
	' 운암	전원음료	2		○		2,000
	남성 추정	시화식품	1		○		100
	' '	미현식품	2			○	1,400
	가덕 내암	진로음료	9	○			3,100
	문의 남계	무중골샘물	1			○	200
중 평	중평 남차	주원미네랄	4		○		723
보 은	산외 외식	선우음료	4		○		270
	내북 상장	반석음료	1		○		800

시·군별	소재지	업체명	취수공	비 고			
				제조업 허가	제조업 신청중	수원개 발허가	취수량 (㎥/일)
★ 옥천 6개업체 7공 (20.7%)	청성 삼남	옥천계르마	1		○		300
	' '	옥천음료	2		○		450
	' '	금천계르마	1		○		100
	' '	현대식품	1		○		400
	' 장수	장수천샘물	1		○		250
	동이 석탄	-	1			○	150
진 천	진천 금암	에브라임	3			○	300
	백곡 성대	태백생수	3			○	450
괴 산	청안 효근	한성샘물	4			○	600
	불정 창산	진수음료	6		○		930
	문광 유평	찬마루샘물	8	○			1,000
계 천	백운	임 협	3			○	900

# 답 변 서

질 문 의 원	장 준 호 의 원		
소 관 부 서	보사환경국	답변자	보사환경국장

## < 질문요지 >

- 지역 의료보험조합 피보험자가 납부하는 의료 보험료를 피보험자의 은행예금구좌를 통한 자동납부방식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 < 답 변 >

- 지역 의료보험조합 피보험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2개월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의료보험법 제41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와 당해 조합 정관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진료기관(병·의원등)에서는 피보험자(환자)가 제시하는 의료보험증에 보험료 납부시 마다 수납 금융기관에서 날인하는 보험료 납부확인(검인)에 의하여 보험료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가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 보험료 납부방법을 현 금융기관 방문납부에서 은행예금 계좌 자동이체 납부방식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의료보험증에 보험료 납부확인 날인(검인)이 불가 하므로 진료기관에서 보험료 체납에 따른 진료제한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타시도의 의료보험조합에서도 보험료의 은행계좌 자동이체 납부방법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건 문제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계속 연구검토 되어야 할 사항 이라고 사료됩니다.



서 면 답 변 요 구 사 항

질문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장 준 호 의원
소관부서	내 무 국 문 화 체 육 과

< 질문요지 >

- 난계국악단 운영지원 검토

< 답 변 >

- 난계국악단의 단원 상임화(현재 35명중 18명 상임화)에 따른 인건비등 운영비가 '96년도에 5억원 소요된다 하는바, 그중 일부인 2억원을 도비에서 지원하고자 '96 수정예산 요구중에 있습니다.

# 도정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서

=====

질문의원	장 준 호 의원	소 속	건설교통위원회
답 변 자	중 등 교 육 국 장	관 련 부 서	중 등 장 학 과

## □ 질문요지

- 미술교과 대학입시 실기고사에 사용하는 석고상으로 외국인 모델을 제시하지 말고 우리나라 위인들의 모델을 제시하여 국민정신 교육을 함양케 할 의향은?

## □ 답변요지

- 현 황 : 대학입시 실기고사시 외국인 모델 사용이 99% 임.
- 외국인 모델을 사용하는 이유
  - 서양석고상의 형태, 골격구도가 뚜렷하고 근육파악 용이, 물체의 깊이감, 덩어리, 양감표현 및 인상표현에 용이함.
- 초·중·고에서 실기실습시 서양 모델을 활용하는 사유
  - 동양모델보다 서양모델이 능력향상에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임.
- 개선노력 중점
  - 덧상교육에 사용되는 석고상은 로마시대의 정치인물 모델로 제작된 석고상으로 전세계가 공통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 앞으로 한국의 위인을 모델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미술학회의 주장과 같이 한국인 모델 석고상이 제작되어, 미술 덧상교육에 활용될 수 있게 하여 실시교육 및 국민정신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노력할 것임.

# 답 변 서

질문의원	건설교통 위원회	이 민 희 의원	
소관부서	건설교통국 주택과	답변자	건설교통국장

## < 질문요지 >

이민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술노동자협회를 정부 법인체로 구성하여 부실시공 방지 및 노동임금을 안정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정, 노동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 답 변 >

○ 질의하신 가칭 기술노동자협회 설립에 대하여는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거주 임학빈이 '94. 3월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한 민원이 건설교통부로 이첩되어 노동부 의견을 들어 회신된 바 있으며 같은 내용이 '95. 10. 12 도정대화시 건의되어 이미 검토한바 있습니다.

○ 기술 노동자협회를 정부 법인체로 구성하려면 정부업무를 대행 또는 보조할만한 공익적 필요성 및 기타 제반여건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중앙정부에서 법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조례의 제정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불가능한 실정이며

○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부실시공 방지 및 하도급 관리상태를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기술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최종철의원	
소관부서	건설교통국	답변자	건설교통국장

### □ 질문요지

충주시 목행동 남한강변에 위치한 공작물에 의하여 대안측에 수해피해가 예상되니 이를 제거할 용의가 없는지 ?

### □ 답 변

-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입니다.
- 최종철 의원께서 질의한 충주시 목행동 남한강변에 위치한 하천공작물에 의하여 대안측에 수해가 예상되니 이를 제거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를 검토코저 충주시와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상기 공작물은 충주비료공장 설립시부터 공업용수를 활용키 위하여 시설한 공작물로 현재 사용중인 새한미디어 공장까지 인계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1993. 9. 23일자로 충주다목적댐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유수인용 및 공작물 허가를 갱신받아 1998. 9. 8까지 허가가 되어 사용중인 공작물입니다.
- 허가조건에 유수점용 및 공작물 허가와 관련하여 국유재산 및 사유재산에 피해 및 민원이 발생시 피허가자가 책임보상토록 되어 있고 충주다목적댐관리사무소에서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이므로 본도에서는 제거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 따라서 본도에서는 충주다목적댐관리사무소장에게 수해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폭을 확보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기를 벌침과 같이 요구 하였습니다.

○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첨 부 : 수해예방에 따른 협조 공문서 사본 1부.

# 충주 다목적댐관리사무소

우 383-810 / 충북 증인군 동당면 조동리 산180-4 / 전화 (0441)43-1301-5 / 전송 40-1231

문서번호 충주총무 30522-1120

시행일자 1993.09.23

수신 새한 미디어(주)

선			지	
결			시	
접	일자		결	
	시간			
수	번호		재	
			공	
치	리과		탐	
당	당자			

제목 유수인용 허가기간 연장 통보

1. 새미 제93 - 168(93. 9.10)호의 관련입니다.

2. 잇 호로 요청하신 조정지댐 저수구역내 충주시 목행동 269- 1번지선의 유수인용 허가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허가하오니 허가조건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허가서 1부.      끝.

충주 다목적댐관리사무소



119

# 허 가 서

허 가 번 호 : 제 93 - 11호

피 허 가 자 : 충주시 목행동 1번지 세한 미디어(주) 대표 한 형 수

하천법 제25조 및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제 20조에 의거 후면 조건  
을 부여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합니다.

1993. 9.

한 국 수 자 원 공 사  
충주 다목적댐 관리 사무소



## 1. 허가내역

검 용 위 치	목 적	인용량	비 고
충주시 목행동 269-1	유수인용 및 공작물 설치	0.555 M <sup>3</sup> /SEC	

2. 허가기간 : 1993. 9. 9 ~ 1998. 9. 8 (5년간)



## 허 가 조 건

1. 점용목적의 변경, 수질오염 행위, 자연경관을 해하는 행위, 하천및 하천 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등을 금지함.
2. 유수 점용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및 사유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피해및 민원 발생시 피허가자가 책임 보상할 것.
3. 천재지변, 댐 관리상 수위 조절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여도 이에 대한 일체의 보상이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공작물의 유지 보수는 피허가자의 부담으로 함.
4. 하천 관계법규, 허가조건및 댐 관리상 필요한 댐관리 사무소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취소,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허가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
5. 본 허가가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피 허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점용자는 점용기간 만료후에도 계속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점용기간 만료 1개월전에 당 소에 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함.
7. 저류지에 공작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 공사의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해야 함.
8. 피 허가자는 우리 공사와의 물 사용 계약시의 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증설 또는 개축의 경우 댐 관리 사무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9. 기타 댐 관리사무소장의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

# 김재근의원 제언에 대한 검토의견

## □제 언

○제 목 : 충청북도 '브랜드'화 추곡수매 정책 도입

### ○제언요지

- UR협정에 의한 수매량 감축과 가격동결에 대신해서  
도에서 수매 참여
- 유기농법등에 의한 쌀을 높은 값에 사서  
충청북도의 '브랜드'화와 품질인증으로 높은 값에 판매
-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주체로 활용하고,  
농촌지도소에서 품질관리

## □검토내용

### ○도에서 추곡수매 참여

- WTO 협정에 따른 추곡수매는  
정부에서 국내보조금 감축계획에 의한 이행계획서상의  
물량을 전량 수매하기 때문에,  
도에서 별도로 쌀값지지를 위한 추가 수매는 어려우며
- 농협등 다른기관에 도에서 자금을 지원하여 수매할경우에도  
WTO보조금 규정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쌀을 수매하는 것은  
통상마찰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

-또한, 정부의 양정개혁방안이 정부기관의 쌀 유통기능을 축소하고,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하는데 기초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쌀 유통에 추가로 참여한다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유기농법에 의한 쌀의 고가 매입

-현재 우리도에서는 극소수의 농가가 벼를 유기농법 형태로 재배하고 있다고는 하나

. 현재 우리나라의 유기농업은 시도단계로 재배기술과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 따라서, 검증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검증하고 보증하여 쌀을 높은값에 사고 파는것은 지난한 실정입니다.

-또한 유기농업에 의한 쌀 재배면적의 확대도

. 재배초기(적어도 5년이상)에는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고,

. 유기질비료의 대량시용과 제초노력등 노동력이 많이 소요 되기 때문에 이의조달이 문제가 되고 생산비가 많이 들며,

. 돌발 병해충 발생시에는 수확개무 정도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정부기관에서 적극 권장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

○ 품질인증제 실시

- 농산물 품질인증제도는 '92년부터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단계로 성과가 미흡하나 앞으로 확대될 것이며
- 품질인증된 쌀은 다른것에 비하여 다소 높은 값에 거래되고 있으며, 우리도의 '95년도 쌀 품질인증제도 실시현황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 또한, 질 좋은 벼는 '92년도부터 설치하기 시작한 미곡종합처리장과 쌀유통 전문업체에서 지역별 특징을 살려 "브랜드"화하여 상품화된 포장쌀을 판매하고 있으나
- 이 사업도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양질미 생산 수매제도 도입

- 정부에서는 미질에 따른 쌀값의 차등화를 도모하고자 '93년부터 품종별 구분수매를 실시하고 있는 바,
- 현재는 준비단계로 가격차등없이 수매하고 있으나, 품종별 공매가격을 토대로 앞으로 미질별 차등가격수매 제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참고로 일본은 이 제도실시를 위하여 10년 동안이나 준비하였다 합니다. \

## □검토의견

- 정부 추곡수매이외에 도에서 수매량 확대와 쌀값지지를 위하여 별도로 직접수매를 하던가,  
또는 농협등 다른기관에 자금을 지원하여 수매할 경우에도 정부수매사업의 대행으로 간주,

WTO협정의 보조금감축에 저촉될 것이므로  
도 지원 수매사업은 시행이 어렵고

- 또한, 유기농업등에 의한 쌀 생산도 현단계에서는 생산량의 획기적인 확대와 공인된 검증이 어려운 등 시행에 제약요인이 많기 때문에

- 최근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건립하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양질미 계약재배 및 품질인증제의 확대와 지역특징을 살린 '브랜드'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 하겠으며

- 앞으로, 이 문제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다시 신중히 시행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 □ 품질인증제도 실시과정과 현황

<관련법령>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92년 7월부터 실시

- 목적 : 소비자의 양질미 선호 추세에 부응하는 지역 특산미 생산장려.  
 소비자들이 믿고 선택할수 있는 객관적인 품질보증제 및 공정거래 실현.  
 쌀의 상품성 향상도모및 가격차별화 유도로 농가 수취가격 증대.  
 농산물 교역의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국내산쌀의 품질 경쟁력 제고.

○ 품질인증처 : 국립 농산물 검사소

○ 품질인증대상자 : 생산자 단체 (농협, 작목반, 영농법인등) , 개인

○ 도내 실시현황

- '92년 7월 진천 농협 최초 실시
- '93년 1월 청원 오창농협 실시

○ '95년도 실시 현황

구분	내역	대상농가 (호)	인증재배 (ha)	'95년도 생산계획량 (M/T)	비 고
계		1,601	1,765	3,806	47,575가마/80KG
청원 오창농협		342	281	900	※ 판매가(농민 → 농협) 135,000~137,000원/80KG
충주 주덕농협		263	290.4	400	
진천 진천농협		305	282	342	
' 덕산농협		75	138	160	
' 이월농협		240	325	504	
증평 증평농협		336	371.7	1,200	
음성 맹동농협		40	76.9	300	

○ 품질인증 방법 및 절차

가. 인증대상 선정기준

- 대상지역 : 산지 유명도 및 대외 성가도가 높은 지역  
    생산 포장조건이 적합하고 재배환경(용수, 토양 등)의 오염우려가 없는 지역
- 대상생산자 : 고품질 쌀 생산 및 품질인증제 발전의지가 확고한 생산자 단체 및 개인

나. 품질인증의 요건

- 전제조건 { 인증쌀은 포장된 상태로 출하되어야 하며 판매처가 확실한 곳이나  
    직거래 출하함을 원칙으로 하여 인증  
    당년 인증된 쌀은 익년의 햅쌀 출하전까지 한하여 출하가능

- 인증의 구비요건

- . 재 배 계약 : 생산농가와 계약재배약정서를 비치, 관리하여야 함.
- . 품    종 : 해당지역의 우량(장려) 품종으로서 농가별 품종확인이 가능할 것.
- . 벼수확건조 : 적기수확은 물론 화력건조시 급건되지 않도록 관리가 가능할 것.
- . 벼수집보관 : 품종별로 구분 산물 수집후 RPC저장고등에 집중 보관관리가 가능할 것.
- . 가    공 : RPC 등 현대식 시설공장에서 쌀 인증(표준출하) 규격으로 정한 특품 이상의 제품생산이 가능할 것.
- . 출    하 : 판매처의 요청 또는 출하계획에 따라 품종별로 수시 가공 및 출하가 가능할 것.

## □ 쌀 인증(잠정 표준출하) 규격 내용

○ 적용 대상 : 멥쌀

○ 품 위

항 목	최 저 한 도	최 고 한 도								
		수 분 (%)	피해립, 분상질립, 착색립			싸라기 (%)	이 물			
			계	분상 질립 (%)	착 색 립 (%)		계 (%)	누 (1.5 kg 중 립)	이 중 립 (1.5 kg 중 립)	돌 (1.5 kg 중 개)
특 품	기준품	15.0	1.5	1.0	0.0	5.0	0.0	0	0	0
상 품	기준품	15.0	3.0	2.0	0.0	10.0	0.1	1	1	0

(기타 조건)

1. 기존품은 농산물 검사규격 규칙에 의한 검사표준품으로 한다.
2. 수분의 최고한도는 당분간 각 등급마다 규격수치에 1.0%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 < 정 의 >

○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를 말한다.

○ 형 질 : 강층의 벗겨진 정도와 제강된 정도, 낱알의 고르기, 심백 및 복백의 정도를 말한다.

○ 수 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 수분을 말한다.

○ 분상질립 : 낱알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낱알 전체 체적의 3/4 이상이 분상질로서 광택이 없는 낱알을 말한다.



- 피 해 립 : 오염또는 손상된 낱알(병해립, 충해립, 반점립, 흑점립, 생리장해립등)을 말한다.
- 착 색 립 : 낱알표면의 전부또는 일부가 황색, 갈색, 다색으로 착색된 낱알로서 호분층 또는 배유부가 변질된것(앵미포함)을 말한다.  
다만, 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싸 라 기 : 1.70mm 그물체로 쳐서 체위에 남는 부러지거나 깨진 낱알을 말한다.
- 이 중 곡 립 : 쌀 이외의 다른 곡립을 말한다.
- 이 물 : 1.70mm 그물체로 쳐서 체위에 남는 낱알이외의 것과 체를 통과한것을 말한다.
- 돌 : 돌, 콘크리트 조각등 광물성의 고형물질을 말한다.

## ○ 품질인증쌀 (高品質米) 기준

1. 산지유명도가 있어야 함.
2. 포장조건이 적합하고 재배환경이 좋은 곳.
3. 우량 장려 품종.
4. 적기 수확.
5. 화력건조시 급건되지 않아야 할 것.
6. 수확후 집단 건조 보관이 가능해야 함.
7. 현대식 가공으로 쌀 인증 규격으로 정한 품종.

### ※ 쌀 인증 규격

- ① 수분 15% 이하
- ② 착색이 0%
- ③ 분상질립 1% 이내
- ④ 싸라기 5% 이내
- ⑤ 이물질 0%

### ※ 쌀의 구분

- |                   |                   |
|-------------------|-------------------|
| 1. 품질인증 (특품)      | ] 검사기관의 검증을 거쳐 생산 |
| 2. 규격쌀 (상품)       |                   |
| 3. 청결미 (양질미) (중품) |                   |

— 〈김재근 의원 보충질문〉 —

- 관변단체에 대한 도비지원 문제와 관련 도지사님의 명확한 방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문제는 도지사 취임후 기회있는 때마다  
분명한 방침을 일관되게 밝혀 왔음

‘앞으로 관변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을 과감히 줄여 나갈 것이며, 사업비적 성격의 지원도 각 단체의 추진사업이 도민 전체의 공익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이부분에 대한 지원도 점차 축소해 나갈 것임

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을 포함한 공공부문과 함께 민간부문의 활성화가 중요함을 인식할 때 현실적으로 공익적 목적의 사회단체들이 건전한 자생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사회단체의 건전한 활동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직접적, 경상적 재정지원보다는 간접적이고 상호협력적인 방향으로 지원해 나갈 것임’.

# 시·군상수도 관망도 보유 및 작성계획

[충청북도]

(금액 : 백만원)

시·군	보유 여부		'96 작성계획		'97 이후계획		비고
			계획기간	사업비	계획기간	사업비	
계	56	$\left[ \begin{array}{l} 8 \text{ 전부보유} \\ 21 \text{ 일부보유} \\ 27 \text{ 미보유} \end{array} \right.$		407		1,467	
청주시 (1)		전부보유			'97	100	
충주시 (5)	시내일원	일부보유			'97~98	210	
	주덕읍	·			'97	35	이류포함
	상모면	·			'97	35	
	양성면	·			'98	35	
	전산화				'97~98	300	
제천시 (7)	시내일원	전부보유	'96	20			
	봉양읍	미보유					
	청풍면	·					
	수산면	·			'97	150	
	덕산면	·					
	백운면	·					
	송학면	·					
청원군 (9)	남일면	전부보유					
	미원면	일부보유			'97	11	
	문의면	·			·	11	
	부용면	·			·	13	
	강내면	·			·	12	
	강외면	·			·	13	
	옥산면	·			·	12	
	오창면	·			·	12	
	북일면	·			·	13	

[충청북도]

(금액 : 백만원)

시·군	보유 여부		'96 작성계획		'97 이후계획		비 고					
			계획기간	사업비	계획기간	사업비						
보은군 ( 3 )	보은읍	미보유			'97~98	200						
	내속리면	'										
	상승면	'										
옥천군 ( 4 )	옥천읍	일부보유	자	체								
	동이면	'										
	청산면	'										
	이원면	'										
영동군 ( 6 )	영동읍	일부보유	'96	50			심천, 양강					
	용산면	미보유			'98	25						
	황간면	'			'	25						
	학산면	'			'	25						
진천군 ( 4 )	진천읍	미보유			'98	80						
	덕산면	'										
	이월면	'										
	만승면	'										
괴산군 ( 4 )	괴산읍	일부보유	'96	48								
	연풍면	'										
	청천면	'										
	불정면	'										
음성군 ( 5 )	음성읍	전부보유										
	금왕읍	미보유						'96	100			
	대소면	'								'98	40	
	생극면	'								'98	40	
	감곡면	'								'97	70	

[충청북도]

(금액 : 백만원)

시·군	보유 여부		'96 작성계획		'97 이후계획		비 고
			계획기간	사업비	계획기간	사업비	
단양군 (7)	단양읍	미보유	'96	189			
	매포읍	'					
	단성면	'					
	대강면	'					
	가곡면	'					
	영춘면	'					
	어상천면	'					
중흥평소 장소 (1)		전부보유	자	체	작	성	

# '93년해 피해상황 및 지원실태 조사결과

## □ 냉해피해 조사 개요

- 조사대상 기관 : 보은군 및 산의면, 경북 상주시 및 화북면
- 조사 기간 : '95. 12. 6 ~ 7일
- 조사 방법 : 관련서류 열람 및 현지조사공무원, 피해주민 의견 청취

## □ 농업재해 관련법규

### ○ 농작물 피해 상황조사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6조·제7조 (피해 신고, 정밀조사 보고) 및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 ○ 농작물 재해 복구 지원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보조 및 지원)
- 풍수해대책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 제5조 (재해복구비용의 국고보조 등)

### 농작물 재해 지원절차

피해농가 신고 → 읍면장 확인 → 시군 → 도 → 농림수산부(확정)

### < 피해 복구비 지원 >

- 지원 : 일반지원, 특별지원
- 지원항목 : 무상양곡,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수업료면제  
이재민구호, 생계비지원, 학자금 대여

※ 세부 지원 기준 별첨

## □ 보은군 냉해피해 조사 개요

### ○ 냉해피해 계획수립 시달 및 점검

- 벼 미출수 지연답 조사(군 자체) : '93. 8. 31
- 벼 출수지연 및 병충해 발생조사(군 자체) : '93. 9. 11
- 냉해피해조사 계획 시달(도 지시에 의한 군계획 수립, 시달) : '93. 9. 17  
( 조사기간 : '93. 9. 15 ~ 10. 5 ( 20일간 )
  - '93. 9. 18 : 읍면 산업계장회의 개최 및 조사 철저 지시
  - '93. 9. 22 : 저온피해 조사 철저 지시
  - '93. 9. 24 : 저온피해 조사 철저 촉구지시
- 농작물 냉해피해 합동조사반 편성조사 : '93. 9. 24~25 (행정, 지도기관)
- 농작물 냉해피해조사 재 점검 지시 : '93. 10. 22
- 보은군 의회의 요청으로 농작물 저온피해상황 재 확인 점검 : '93. 10. 30

### ○ 냉해 피해상황 조사 실태

- 농작물 저온 피해 조사 요령(도 지침)에 의거 조사 추진
  - 조사대상 작물 : 벼(중점조사) 및 전작물
  - 마을단위 농작물 저온피해 조사 위원회에서 순회 합동 조사  
조사위원회 구성 : 면, 지도소, 농민대표 등으로 구성
    - ※ 산외면 저온피해 조사위원회 : 24 개반, 85 명  
( 행정 12, 지도 1, 마을 72명 )
  - 조사기준: 농업재해피해 조사보고요령에 의거 면적 및 피해율 조사
- 피해부락 마을 리장(산외·대원리)의 의견
  - 피해조사는 공정하게 조사된 것으로 인정되나
  - 인근 경북도 상주·화북면에 비하여 지원된 무상양곡 등 복구비가 상대적으로 적어 피해농가의 불만이 있음.



# □ 냉해 피해·복구비 지원상황

< 경북 상주군·화북면 대비 보은군·산외면 >

## ○ 농작물 피해상황

구 분		피해농가	피해면적	피 해 정 도 별			
				30%미만	30~50%	50~80%	80%이상
경북	상주군 화북면	9,665 호 453	8,925 ha 425	2,370 77	2,654 103	2,500 158	1,401 87
충북	보은군 산외면	660 96	303 44	97 2	79 9	88 17	39 16

## ○ 복구비 지원상황

( 금액 : 천원 )

구분	항 목	계		일반 지원		특별 지원		
		물 량	지원액	물량	지원액	물량	지원액	
경북	상주군	계	4,148,697		1,812,473		2,336,224	
		무상양곡	28,025가마	2,578,300	13,215	1,215,780	14,810	1,362,520
북	화북면	무영농자금	4,525 호	723,942	2,762	443,038	1,763	280,904
		이재민구호	989 명	108,573	989	108,573	-	-
북	산외면	학자금지원	228 명	45,082	228	45,082	-	-
		특별생계비	3,083 호	692,800	-	-	3,083	692,800
충북	보은군	계	336,431		204,960		131,471	
		무상양곡	2,141	196,972	1,585	145,820	556	51,152
북	화북면	무영농자금	324	56,979	299	52,860	25	4,119
		이재민구호	-	-	-	-	-	-
북	산외면	학자금지원	30	6,280	30	6,280	-	-
		특별생계비	381	76,200	-	-	381	76,200
충북	보은군	계	75,235		23,167		52,068	
		무상양곡	519가마	47,748	180	16,560	339	31,188
북	산외면	무영농자금	83 호	16,790	20	4,510	63	12,280
		이재민구호	14 명	1,537	14	1,537	-	-
북	산외면	학자금지원	2 명	560	2	560	-	-
		특별생계비	36 호	8,600	-	-	36	8,600
충북	보은군	계	12,358		2,340		10,018	
		무상양곡	89	8,188	20	1,840	69	6,348
북	산외면	무영농자금	16	3,370	2	500	14	2,870
		이재민구호	-	-	-	-	-	-
북	산외면	학자금지원	-	-	-	-	-	-
		특별생계비	4	800	-	-	4	800

※ 보은군의 피해복구 지원중 1,152천원( 무상양곡 552. 생계비 600)은 당초 충북도로부터 지원된 복구비 이외에 별도로 준비확보 지원 금액임.

## □ 농작물 재해피해 조사·지원상 에로점

- 전작물의 경우 후기작물의 피해를 산정에 대한 명확한 조사지침 미비
  - 담배수확후 채소 등 2기작 작물 재배시 생육기간이 짧아 수량성이 1기작에 비하여 저하되고 있을 경우의 피해를 조사지침이 없었음.
- 피해조사시 피해율을 보는 관점이 달라
  - 농가와 조사 공무원간 의견이 상충된 지역도 있었든바 저온피해조사위원회의 활발한 참여가 요구되었음.
  - 냉해 피해정도를 감안치 않고 지원된 무상양곡만으로 인근 지역과 단순비교 함에 따라 적게 지원된 지역 농민은 상대적으로 불만을 갖고 있었음.
- 재해복구 지원시 피해 필지단위가 아닌 농지소유 규모에 의한 농가단위 피해를 적용으로 농가가 체감하는 피해율에 비하여 지원금액이 미흡하였음.

## □ 농작물 재해 피해상황 조사 결과

< 보은군·산외면 대 상주군·화북면 >

- 산외면의 냉해 피해조사는 비교적 공정하게 조사된것으로 사료됨.
  - 마을단위 조사위원회와 합동으로 조사
  - 피해주민이 조사대장에 날인 실시

다만 일부에서는 조사요령 미숙으로 소홀히 조사된 면도 있었음.

○ 본도 산외면에 비하여 경북 화북면 지역은

- 전작물 피해면적을 산외면에 비하여 상향 조사된것으로 사료됨.  
특히 녹두, 팥 등 담배후작 면적을 피해면적으로 집계하므로서  
피해면적이 대폭 늘어난것으로 추정됨.

※ 전작물 피해(화북면) : 171ha (피해 전면적 대비 40%)

( 산외면은 전작물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었고  
당시 피해정도가 경미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 )

- 피해율도 산외면에 비하여 다소 높게 조사된것으로 사료됨.

## □ 농작물 재해지원에 따른 향후 대책

- 농작물 재해피해 조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 농업재해 관련법규 ( 피해조사 요령 및 복구계획 수립)의 숙지
  - 작물별 피해율의 정확한 산정 기술 습득 도모
- 농작물 재해 조사시에는 농민 입회로 민원소지를 사전 차단시켜야 됨.
  - 반드시 부락대표 및 피해농가 입회하에 조사 확정
  - 동 조사상황은 부락주민에 열람 시키는 등 공정성 유지
- 금후 농작물 재해 조사시 농민의 입장이 보다 많이 반영되도록 지도.

## ※ 피해 복구비 지원 기준

	항 목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역
현  행	· 무상양곡	· 1ha미만 50~80% 피해농가 · 1ha미만 80%이상	5가마 10
	· 영농자금상환 연기, 이자감면	· 50%이상 피해농가	2 년간
	· 수업료면제	· 1ha미만 50%이상 피해농가	2기분 (6개월)
	· 이재민 구호	· 1ha미만 80%이상 피해농가	(1인/1일) 1, 219. 79원 (3개월분)
'93  내  해	· 무상양곡	⇒ · 규모에 관계없이 30~50% 피해 · 1ha이상 50~80% · 80%이상 ※ 통일쌀에서 일반쌀로 지원 60, 000원 → 92, 000원	3가마 5 10
	· 영농자금상환 연기, 이자감면	⇒ · 30%이상으로 피해농가 (수혜범위 확대)	2 년간
	· 수업료면제	· 1ha미만 50%이상 피해농가 (현행과 동일)	2기분 (6개월)
	· 이재민 구호	· 1ha미만 80%이상 피해농가 (현행과 동일)	(1인/1일) 1, 219. 79원 (3개월분)
	· 생계비 지원	⇒ 신 설 1. 5ha미만 50~80%미만 피해농가 80% 이상	200천원 400
	※ 학자금대여	⇒ 신 설 · 1ha미만 30%이상 피해 · 1~1. 5ha미만 50% · 1. 5~3ha미만 80%	

※ 양곡대는 '91년산 일반미 기준 ( 92, 000원 / 80k )

특별지원 학자금 대여는 신청을 받아 융자 지원, 이자보전은 사후 정산

## ※ '93 농작물 피해율 산출요령

### ◇ 농가단위 피해율

피해농가가 전체 경작하는 면적(임차농지포함)에 대한 피해면적의

수확개무 환산면적(피해면적 × 피해율 비율)

→ 수확개무 환산면적(피해면적 × 피해율 비율) ÷ 총 경작면적

### ◇ 농가소유 농지 규모

○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실 소유 농지 면적 기준 조사

○ 밤나무 등 유실수 : 재배면적 5ha를 농작물 재배 1ha와 같은 면적으로 환산

○ 축산농가규모의 경우 농작물 1ha재배와 같은면적으로 환산

소·말 15두,      짓소·사슴 10두,      돼지·면양·개는 100두  
오리·닭 6,000수,      토끼·친칠라는 2,500마리

○ 소유농지 없는 임차 경작농가는 1ha미만 농가로 분류

### ◇ 조사 제외농가

○ 소유농지 전체를 타인에 임대

○ 농외소득이 피해농가 소득의 80%이상 또는 경지 소유면적이 0.1ha미만

○ 가구주가 농업을 부업을 하는 상인, 봉급생활자

보은지역 직행버스 정차장 관련자료

문서번호 문서번호	고행33120-4690 (전화: )	시행강령 특별규정	
보존기간	일부·중영구 10. 5. 3. 1.		
수신처 보존기관			
시행일자	'90. 3.		
보조 기관	부지사 국장 과장	체 조 기	문서 종 제
기안책임자	고통행처개장 오상진	이순구	1990. 3. 9 통시관
장유 수신 참조	수신처참조	발신 명 의	충청북도지사
제 목	시외버스 중간 정류소 조정		
'90. 2. 5 - 2. 17중 실시된 정부합동 종합 감사시 지적되어 시정			
지시된 청주-보은 구간의 시외버스 중간 정류소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바니 이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정류소의 조정 ( 보은군 산외면 봉계리 정류소 폐쇄)			
·변경전 : 청주-미원-창미-봉계-보은 정차			
·변경후 : 청주-미원-창미-보은 정차			
*조정대상 : 운수 33120-14928(87,9,14)호로 위치면에 3개사 14회			
류 정차보복 개선명령한 사항			
*시행일시 : '90. 3. 16 첫차부터 시행. 끝			
수신처 : 대성, 대한, 시운, 충북, 충원, 진선			

1505-25(2-1)인(1)자

"내가아끼 종이하장.

268mm x 190mm이 내.외.기 2군 60 0.0.

( 제 2 안 )

수신 : 수신지참조

1990. 3. 09  
종지일

제목 : 시외버스 중간 정류소 조정 사항 통보

정부 광동감사시(90,2,5-2,17) 지적되어 시정지시된 청주-보은간

시외버스 중간 정류소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기 통보하니 업무  
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양조정내역 : 제1안 이기 시행. 끝

수신처 : 보은군수, 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003770

감사 01580 -

90. 2 24.

수신 수신처 참조 (교도 행정과)

제목 90 정부 합동종합감사 현지조치 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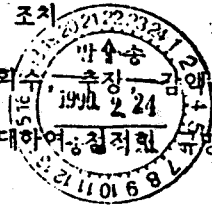
90. 정부합동종합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현지 조치지시를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다음에 의거 조치하고 그 결과를 90. 3. 20까지 관계증빙서 첨부 처리전말을 각각 2부씩 보고(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정, 주의등 행정상 조치

시정, 주의를 요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 요구대로 처리하되 주의사항이라 하더라도 시정적인 성격을 지닌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 사항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취약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완전 근절을 위한 근원적인 예방 대책을 강구할것

나. 추징, 회수, 감액등의 재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회수 추징 감액등으로 분류하여 지체없이 시정 완료하고 그 발생 요인과 동기등에 대하여 철저한 규정하여 앞으로의 예방 대책을 강구 할것



연			계장	
승인시	2.26	286		
처리과				

Handwritten signatures and stamps, including a date '90. 2. 24' and a name '김정환'.

감사 01580 -

90. 2. 24.

- 첨부 : 1. 감사결과 현지 조치 지시서 1부  
2. 조치 결과 보고 서식 1부. 끝.

충 청 북 도 지



수신처 : 거(15, 19, 21, 23, 27 ~ 33, 35 ~ 37, 40, 42, 45 ~ 52)

나 ( 1, 5, 20 )

더 ( 01 - 13 ).

No

71

# 現地措置指示書

1990年 忠清北道에 對한 政府合同 綜合監査時 指摘된 事項을 아래와 같이 現地措置 指示하니 即時 措置하기 바람.

1990. 2. 17.

政府合同綜合 監査班長 洪 性



所 管	施行年度	行政上措置	財 政 上 措 置		身 分 上 措 置
			措 置 方 法	金 額	
지역경제 국 교통 행정과	87	시정			

題 目 중간 정류소 개설 개선명령 부당

## 가. 現 況

### 0. 시외버스 중간정류소 개설현황

- 변경전 : 청주-미원-보은
- 변경후 : 청주-미원-세거리-보은

### 0. 현 교통수단

- 시내버스 : 1일 51회 운행
- 시외버스 : 1일 132회 운행(무정차)

나. 違法不當內容

0. 직행좌석시외버스의 정류소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거 기.종점간 정류함이 없이 운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송수요의 급격한 변동등의 사유로 관할 관청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설치할 수 없으며 담당공무원의 검토조사결과에서도 정류소 개설이 기존 운송질서를 크게 문란케할 우려가 있고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제시 되었는데도 청주-보은구간중 봉계 세거리에 중간정류소 개설 개선명령을 받아야 관계규정을 위배하였음

류    三

다. 處分指示

0. 시외좌석버스의 특성을 살려 가급적 중간정류 개설을 억제하기 바람.

충청북도청

2

# 도정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서

=====

질문위원	유 재 철 의원	소 속	교육사회위원회
답 변 자	중 등 교육 국 장	관련부서	사회교육체육과

## □ 질문요지

- 학교급식은 신축교실을 사용하여 실시하고, 정규수업은 낡은 유휴교실에서 실시하는 학교현황 및 개선대책은?

## □ 답변요지

- 학교현황 및 개선대책

학 교 명	급 식 학생수	급 식 소 설 치	낡은 교실에서 수업 받는 대상학년	개 선 대 책
청원 미원국	321	교실개축	유치원(2실)	학생수 증감을 고려 개축예정
청원 옥산국	595	교실개축	1학년, 유치원(2실)	학생수 증감을 고려 개축예정
보은 탄부국	52	교실개축	3, 4, 5, 6학년(4실)	개축대상 건물로 '96년도 본관 1층위에 증축확정
보은 수한국	48	교실개축	유치원(1실)	현재 5학급에서 '96년도 4학급 감축예정으로 본관 수용 가능

- ※ 1. 농촌지역 학교는 학생수가 점점 감소함에 따라 유휴교실을 이용 급식소를 설치하고 있으나 대상건물이 철거 또는 개축대상 건물일 경우 학생 수용계획을 감안 기존교실을 개축하여 급식소로 활용하고 있음.
- 2. 향후 급식소 설치시 학교시설 활용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음.

# 보은개발촉진지구답변자료

-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개발 잠재력의 극대화로 민간부문 자율참여 유도
- 지역균형개발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 유도

##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보은군 5개읍면 41개리 일원
- 면 적 : 135.0km<sup>2</sup> (약 4,084만평)
- 사업내용 : 관광휴양사업 8건 3,199백만원  
주민소득사업 3건 100 ' ' ' ' ' '  
기반시설사업 9건 498 ' ' ' ' ' '
- 사업비 : 379,739백만원 (공공 78,312 민자 301,427)
- 사업기간 : '96 - 2000년 (5개년계획)

## □ 추진방향

- 지방자치단체 주도하에 개발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 도로, 용수공급,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사업 우선적 지원

## □ 추진상황

- '95. 11. 4 보은개발촉진지구 지정및 개발계획 건교부 승인신청 (관계부처 협의중)
- '96년도 사업지구 사업계획승인및 실시시설계약 발주 : 국비 618백만원
- '96년부터 5개년 계획기간중 매년 100억원 사업비 투자 기반시설사업 추진

## □ 민자유치추진실적

- '95. 10. 22 재울산보은군민회 참석 설명회
- '95. 11. 1 제일동포 보은출신 기업인 방문 설명회(일본 오사카)
- '95. 11. 9 재경 보은군민회 참석 설명회
- '95. 11. 29 삼성그룹에서 전지구내 사업계획 자료요청
- '96. 1월 개발촉진지구 기획단 설치운영 : 민자유치촉진방안 적극 강구

# 報恩開發促進地區開發計劃

## □ 개발의 目標

- 산자수려한 속리산주변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한 관광산업 개발 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산업으로 지역 산출물의 고부가가치화 실현과 민박촌 등 농외소득증대사업 전개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
- 개발촉진지구 접근도로와 지구내 사업지간 연결도로 등 기반시설확충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화와 지역경쟁력을 제고시켜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
- 자연환경의 보전과 개발을 조화있게 추진하여 주민 정주기반 조성과 국토의 균형발전 기여

## □ 개발의 基本方向

- 속리산관광단지를 거점으로 한 구병산공원과 보은실버타운, 스키장, 신정 자연휴양지를 연계하여 관광벨트화 추진으로 한정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민간부문 자율참여 유도
- 지구별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시설유치로 전계층이 직접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4계절 전천후 관광휴양지로 조성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환경용량 범위내에서 적정 산업을 선정하고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여 청정환경을 보존

## □ 개발의 位置 및 面積

(단위 : km<sup>2</sup>)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보은군내 5개읍면 41개리	135.0	
보 은 읍	종곡,성족,강신,누청,대야,성주,어암리	18.3	
내속리면	북암,백현,상판,중판,하판,갈목리	23.8	
외속리면	장내,하개,서원,불목,오창,장재,봉비리	18.0	
마 로 면	적암,구병,갈평,수문리	16.2	
산 외 면	산외면 17개리 전역	58.7	

□ 部門別 開發事業

- 관광 휴양사업 : 실버타운, 속리산관광단지, 신정자연휴양단지, 구병산공원 삼년산성, 속리산스키장, 북암연수원, 동학기념공원조성
- 주민 소득사업 : 대추식품공장, 특산물판매센터, 민박촌조성
- 기반시설 사업 : 신정저수지(5만톤급) 축조, 하수처리장시설 도로개설 및 화·포장 7개노선 29.2km

□ 投資計劃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국비	지 방 비			민 간 자 본
			계	도비	군비	
합 계	(100%) 379,739	(14.4) 54,845	(6.2) 23,467	15,341	8,126	(79.4) 301,427
관광휴양사업	319,939	8,325	15,687	9,661	6,026	295,927
주민소득사업	10,000	3,750	750	75	675	5,500
기반시설사업	49,800	42,770	7,030	5,605	1,425	-

※ 財源對策

- 국 비 : 건교부 32,540백만원, 내무·문체·농림·환경부 22,305백만원
- 지 방 비 : 주민 공모주 발행 및 개발부담금 제도의 도입 추진
- 민자유치 : 투자메리트 제공과 행·재정적 인센티브제공 등 민자촉진책 마련

□ 環境汚染低減對策

- 기업체의 생활하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 설치 유도, 녹지시비로 수질 오염 부하량 최소화
- 단지내 차집관로 설치와 하류의 하수종말처리장에 고도처리 공정을 추가하여 남한강 최상류인 달천의 오염부하량을 현재의 BOD 365.0 T/연 수준에서 BOD 38.3 T/연 으로 약 89.5% 수질개선 효과가 기대됨



□ 開發促進地區 開發計劃

(단위 : 億원)

分野別	事業名	位 置	開發方向	事業量	事業費	事業期間
	합 계		20 건		3,797	'96~2000
관광 휴양 사업	계		8 건	3,118천㎡	3,199	'96~2000
	보은 실버타운	외속 하개	노인휴양복지타운	715 "	564	'96 ~'99
	속리산관광단지	내속 상판	거점휴양관광단지	880 "	1,164	'96~2000
	신정자연휴양지	산외 신정	가족단위종합휴양지	693 "	740	'96 ~'98
	구병산공원	마로 적암	산악탐방휴양관광지	82 "	199	'96~2000
	삼년산성	보은 어암	역사문화탐방관광지	194 "	25	"
	속리산 스키장	내속 중판	국제규모스키장조성	520 "	407	'96 ~'98
	복암 연수원	" 복암	기업체연수원 건설	17 "	90	"
	동학기념 공원	보은 성죽	역사·문화 교육장	17 "	10	"
	주민 소득 사업	계		3 건	75천㎡	100
대추 식품공장		외속 장재	생산시설및 전시관	15 "	50	'96 ~'98
특산물판매센터		산외 장갑	휴게·전시판매시설	30 "	15	'96 ~'97
민박촌 조성		외속 서원	민박 및 전통음식점	30 "	35	'96 ~'98
기반 시설 사업	계		9 건		498	'96 ~'99
	①실버타운 진입로	외속 하개	2 차 선 신 설	1.0km	19.2	'96 ~'98
	②스 키 장 "	내속 중판	" "	1.0 "	12.0	"
	③삼년산성 "	보은 성주	" "	1.0 "	14.0	"
	④사업지구연결도로	누청~신정	" "	15.0 "	234.6	"
	⑤지구 진입도로	구티~길탕	" "	1.5 "	18.0	"
	⑥농 촌 도로	구인~장재	" "	2.3 "	27.6	"
	⑦지방도(제575호) 확·포장	봉계~장갑	" 확포장	7.4 "	83.6	"
	용수시설 사업	산외 신정	저수지 축조	5만톤	9.0	"
	환경 정화사업	산외 장갑	하수종말처리시설	7천톤/일	80.0	'96 ~'99

# 事業別 投資計劃 總括

(단위 : m<sup>2</sup>,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			국비 소관부처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3,191,660	379,739	54,845	23,467	301,427	
관광 휴양 사업	소계	3,116,860	319,939	8,325	15,687	295,927	
	보은 실버타운 건설	714,800	56,402	800	1,702	53,900	농림수산부
	속리산 관광단지	879,900	116,395	5,238	5,238	105,919	문화체육부
	신정 자연휴양단지	693,000	74,027	800	2,245	70,982	농림수산부
	구병산 공원조성	82,160	19,934	-	864	19,070	
	삼년산성 사적공원	194,000	2,491	987	1,504	-	문화체육부
	속리산 스키장	520,000	40,690	-	3,634	37,056	
	북암 연수원	16,500	9,000	-	-	9,000	
	동학 기념공원	16,500	1,000	500	500	-	문화체육부
주민 소득 사업	소계	74,800	10,000	3,750	750	5,500	
	대추 식품 공장	14,800	5,000	3,500	-	1,500	농림수산부
	특산물 판매 센터	30,000	1,500	250	250	1,000	"
	민박촌 조성	30,000	3,500	-	500	3,000	
기반 시설 사업	소계		49,800	42,770	7,030	-	
	실버타운 진입로신설	1.0 "	1,920	1,920	-	-	건설교통부
	스키장 "	1.0 "	1,200	1,200	-	-	"
	삼년산성 "	1.0 "	1,400	1,400	-	-	"
	누청~신정간도로신설	15.0 "	23,460	23,460	-	-	"
	길탕~구터 "	1.5 "	1,800	1,800	-	-	"
	구인~장재 "	2.3 "	2,760	2,760	-	-	"
	봉계~장갑도로확포장	7.4 "	8,360	4,180	4,180	-	내무부
	신정 지수지 축조	5만톤	900	450	450	-	농림수산부
적수처리장 시설	7천톤/일	8,000	5,600	2,400	-	환경부	

# 事業推進 期待效果

## □ 開發效果 分析

-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통하여 관광지 개발과 주민소득증대사업 육성은 지역 주민의 의욕과 희망을 안겨줄 것이며,  
신규고용 창출과 관련산업의 생산유발 및 매출증대로 주민소득증대는 물론,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 住民所得 増大效果  
개발사업으로 인한 신규 고용과 관광객수의 증가에 따라 지역주민 소득의 증대효과는 2001년에 21,935백만원, 2006년에는 116,957백만원, 목표년도인 2011년에는 210,535백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 雇傭創出效果  
개발촉진지구 개발로 인한 직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관련산업의 생산유발과 매출액 증대에 따라 2001년에는 869명, 2006년에 1,289명, 2011년에는 2,101명으로 예상됨
  
- 地方稅收 増大效果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수입의 증대효과는 2001년 961백만원, 2006년 1,893백만원, 목표년도인 2011년에는 3,084백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됨
  
- 國土의 均衡開發 寄與  
도로망 확충과 각종 개발사업을 통하여 국가적으로는 국토의 균형개발에 기여하고,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함

## 답 변 서

질문 의원	농림수산 위원회 이 희 복 의원		
소관 부서	보사환경국	답변자	부 지 사

### <질문요지>

이희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청댐 특별대책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년도별 예산지원 요청 및 확보상황과  
'90년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 변>

#### ○ 대청댐특별대책지역 종합대책의

'90년도 생활환경 조성지원사업비 9,015백만원의  
사업비는 년차별 지원계획으로

- 대전시 동구 — 충북 옥천간 16.1 Km 와
- 옥천군 동평 — 금천간 5.1 Km에 780 백만원등의  
도로확포장 사업비로 지원 되었고

○ 소득원 개발사업으로는

- 옥천군 농산물판매단지 설치 등에  
6,200만원 용자
- 보은군 회남면에 호도나무 9,000주,  
2천만원
- 옥천 장계국민관광지 조성등에 20억원
- 영세 축산농가에 2억 등

총 23억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원사업은  
수질보전기초시설 설치비, 생활환경조성비,  
소득원개발사업비를 매년 중앙부처에 지원요청하여

- 수질보전기초시설 사업은 요청한대로 거의 지원이  
되었고

생활환경조성사업, 소득원개발사업등은 요구한  
사업비에 비하여 지원실적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